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867호(號) 1933(昭和 8)년 4월 1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1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3(昭和 8)년 4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쌀[米]
- 2 발 역(發 驛) 진주(晉州), 남문산(南文山), 함안(咸安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2천 톤(噸) 이상(以上) 하수(荷受)한 경우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2할(割)5푼(分) 감(減) 3천 톤(噸) 이상(以上) 하수(荷受)한 경우 보통임륜(普通賃率)의 3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3(昭和 8)년 4월 1일부터 1934(昭和 9)년 3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하여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착(著) 통계(通計) 전기수량(前記數量) 이상을 하수(荷受)한 사람[者]에 대(對)하여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(運賃)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하는 것으로 함.

나 본(本) 임륜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사람[者]은 매월(每月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조서(調書)를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착역경유(著驛經由)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진주(晉州), 남문산(南文山), 함안(咸安) 발(發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착(著) 쌀[米] 운임조서(運賃調書)

(소화[昭和] 년[年] 월분[月分])

하송인(荷送人)

화물운송통지서 (貨物運送通知書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톤수(噸數)	소정운임(所定運賃)	할인운임(割引運賃)	환급액(還給額)	기 사(記事)
일부(日附) 번호(番號)							
계(計)							